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매년 공단고시에 따른다.

① 급여제공시간 이용기준

급여종류별 이용 및 제공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시간에 따른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대리인)에게 안내하고 수급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②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산규정

관련법령규정에 따른 가산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장기요양 수가개정에 따른 수급자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내드립니다.

◆ 제도변경내용

매년 제도변경내용 안내문을 전년도 12월에 수급자 개별안내문 예정입니다.

◆ 본인부담금 개정 변경시행 예정

인상된 수가적용기준은 매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후불정산으로 1월분 2월 입금)

수급자(보호자)께 안내 후 수가인상반영된 변경계약서를 12월에 개별작성할 예정입니다.

◆ 재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게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수가표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재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구 분	수가(원)
차량이용시	84,670	차량미이용시	47,67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공단결정)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등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

재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구 분	수가(원)
차량이용시	82,160	차량미이용시	46,25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공단결정)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등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

재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30분 이상	15,430	2,315	150분 이상	44,770	6,716
60분 이상	22,380	3,357	180분 이상	50,400	7,560
90분 이상	30,170	4,526	210분 이상	56,170	8,426
120분 이상	38,390	5,759	240분 이상	61,950	9,293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차량이용시	78,580	11,787	차량미이용시	44,240	6,636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공단결정)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등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

재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시간수가당) 이용료 (일반15%,경감9%,경감6%,기초0%)									
시간	수가표	본인부담금(원)			시간	수가 표	본인부담금(원)		
		(15%)	(9%)	(6%)			(15%)	(9%)	(6%)
30분	14,530	2,179	1,307	87	150분	42,930	6,439	3,863	2,575
60분	22,310	3,346	2,007	1,338	180분	47,460	7,119	4,271	2,847
90분	29,920	4,488	2,692	1,795	210분	51,630	7,744	4,646	3,097
120분	37,780	5,667	3,400	2,266	240분	55,490	8,323	4,994	3,329
방문목욕		차량미이용(1회당)			60분	41,930	6,289	3,773	2,515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공단결정)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등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

재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30분 이상	14,530	2,179	150분 이상	42,930	6,439
60분 이상	22,310	3,346	180분 이상	47,460	7,119
90분 이상	29,920	4,488	210분 이상	51,630	7,744
120분 이상	37,780	5,667	240분 이상	55,490	8,323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차량이용시	74,470	차량미이용시	41,93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공단결정)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등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

재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9.01.01)

※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구 분	수가(원)	본인부담금(15%)
30분 이상	14,120	2,118	150분 이상	41,730	6,259
60분 이상	21,690	2,169	180분 이상	46,130	6,919
90분 이상	29,080	4,362	210분 이상	50,190	7,528
120분 이상	36,720	5,508	240분 이상	53,940	8,09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차량이용시	72,540	차량미이용시	40,84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공단결정)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천재지변등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